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p.79~105
한국세무학회

성실납세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대한 연구*

심태섭** · 김유찬*** · 전규안****

<요 약>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부터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성실납세제도(구 간편납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실납세제도는 본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으로 납세가 간편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재정경제부의 성실납세제도의 개요를 알아보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와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본 후, 외국의 유사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실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적용대상기업의 매출액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득노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도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추천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기록방안과 현재의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의 부여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재정경제부가 어렵게 마련한 성실납세제도가 회계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성실납세제도, 간편납세제도, 영세사업자

*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학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2-799-1403, 공동저자(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yckim57@kmu.ac.kr, 053-580-6422,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kajeon@ssu.ac.kr, 02-820-0581, 공동저자

I. 서 론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나 세무지식이 부족하기에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빠짐없이 기록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세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즉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부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장부의 기록과 유지가 쉽지 않으며, 세무조정 등의 세무업무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더욱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된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는 항상 세무조사 등 세무관련 업무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와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자, 재정경제부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재정경제부 2005a). 즉 성실히 본인소득을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의 납세준용비용(tax compliance costs)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세무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을 추진하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제도가 간편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세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중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납세제도(이하 ‘성실납세제도’라 함)의 마련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관련 이해단체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근에는 국회의 마지막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갖춘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경제부의 성실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외국의 유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입법추진 중인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

1. 성실납세제도의 추진 경위

재정경제부는 2005년 상반기에 본인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하여 세금계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간편납세제도’라 함)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재정경제부 2005b). 즉 본인의 소득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전자장부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장부기록을 지원하며, 세무조정과정을 간단히 함으로써, 전자장부시스템에 의하여 각 사업자의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간편납세제도)의 마련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5월에 외부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하여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한국세무학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당사자인 세무대리인단체(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관련단체(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관련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납세자연합회 등)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재정경제부에서는 내부 시안을 마련하여 2006년 세법개편안에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²⁾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국회통과과정에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얻었으나, 관련단체간의 의견조율 등이 부족하여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간편납세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제도’로 전환하고, 그 적용대상도 매출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등 성실성을 보장하는 장치나 시스템을 갖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로 함)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다(조세일보 2005.12.7). 이러한 과정에서 심사소위에서는 관련 단체 등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판정을 내렸다(조세일보 2005.12.12.).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성실납세제도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제도를 둘러싼 관련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 팀은 정부(재정경제부, 국세청), 중소기업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 세무대리인 단체(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학계(한국세무학회)등의 대표 7명으로 구성하여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하였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종안으로 2006년 초에 재정경제부는 다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소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다. 2006년 2월의 심사소위 회의 결과 성실납세제도의 시행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인 의결은 다음 회기(임시국회)에서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조세일보 2006.2.20.). 이후 4월 중순에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소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심사소위로 넘기게 되었다(조세일보 2006.4.19.).

1) 최종용역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태섭 외(2005)를 참조하시오.

2) 2005년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2005c)를 참조하시오.

2. 입법추진 중인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

본 절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하여 현재 입법추진 중인 성실납세제도의 개요를 소개한다.³⁾

가. 성실납세제도의 취지 및 기본방향

성실납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단순하고 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비용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적용대상

성실납세제도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기업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 기준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매출규모는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중 자기조정사업자의 기준금액(개인 1.5~6억 원, 법인은 5억 원) 이하이며, 여기서 매출액은 직전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우선 현행 각종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장부기장제도와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범위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사업자의 장부기장제도

업 종	개 인				법 인	
	추 계 (미기장)	장부기장 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도소매, 광업 등	—	3억 미만	6억 미만	6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제조, 건설, 음숙 등		1.5억	3억	3억	5억	5억
서비스 등		0.75억	1.5억	1.5억	5억	5억

3) 이하의 내용은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용역보고서(심태섭외 2005), 재정경제부에서 2005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재정경제부 2005d), 2006년 2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소위의 제출자료(재정경제부 2006a)와 신문기사(조세일보 2006.2.20)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내용이기때 일부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아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며 각 대상자의 기준금액은 <표 1>과 같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자기조정사업자와 외부조정사업자로 세분되며 각 사업자의 기준금액도 <표 1>과 같다.⁴⁾ 반면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당국에서 추계결정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기준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와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로 세분된다.⁵⁾ 이에 비하여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다시 자기조정사업자와 외부조정사업자로 세분되며, 외부조정계산서 제출대상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청고시 제2003-11호).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중 자기조정을 하여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조정을 하여야 하는 납세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2) 성실기장사업자 판정기준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실기장사업자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사업자(비영리법인은 제외)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11가지 유형의 사업자만을 성실기장사업자로 판정한다(재정경제부 2006a).

- ① 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 ③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로얄티)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 ④ 특정 법인(3개 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 ⑤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 등)
- ⑥ 농수산물물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4) 외부조정의무자는 관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11호)를 참조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것은 관련 세법의 규정(소득세법§160②, 소득세법시행령§208⑤)을 참조하시오.

5)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추계결정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시행령§143).

업 종	기준금액		
	'04·'05귀속		'06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도소매, 광업 등	90백만원 미만	90백만원 이상	72백만원
2.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60백만원 미만	60백만원	48백만원
3. 서비스업 등	48백만원 미만	48백만원 이상	36백만원

- ⑦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⑧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⑨ 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⑩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보험모집인 등 개인에만 해당함)
- ⑪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 사업자

이와 같이 매출액기준과 성실기장사업자 판단기준의 동시 적용시 개인은 총대상자의 3%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그리고 법인은 전체대상자의 1%에 해당하는 약 3천개가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이 되어 총 3만3천명미만이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방법 및 절차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최초 신고납부 후에는 계속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시행 첫 해(2007년도)의 경우는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연도 개시 후 2월내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그리고 세무서에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인업무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승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자 스스로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다. 다만, 성실납세제도를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사업연도 후 3년내에 다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성실납세제도 적용 중 수입금액기준 초과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라.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화 · 표준화

성실납세제도에서는 경비 등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⁶⁾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재정경제부가 최초 간편납세제도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마련할 당시에는 소득금액계산 절차 등을 단순화 · 표준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기장이 간단한 전자장부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에는 전자장부의 개발은 유보된 상황이다.

(1) 감가상각비 계산

현행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임의상각이며,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성실납세제도에서는 강제상각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5년(건물은 20년)으로 단순화하였다. 현행규정과 비교한 개정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성실납세제도의 감가상각방법

현행	성실납세제도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 (임의상각)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 (강제상각)
☐ 상각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용 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개발비 : 20년내 정액법 ○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등 : 사용수익기간 안분	☐ 정액법으로 단일화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pm 25\%$ (지방청장승인시 $\pm 50\%$) 범위내 선택 가능 ○ 무형고정자산 : 5년(영업권등), 10년(특허권등), 20년(광업권등), 50년(담사용권) ○ 기계장치 : 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예) 건설업 5년(4~6년중 선택) - 음식숙박 8년(6~10년중 선택) - 섬유제조 10년(8~12년중 선택) ○ 건물 :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 단일 내용연수 ○ 5년(건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현행 접대비 한도계산규정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의 기본금액에 각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상이한 적용률을 이용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방법을 성실납세제도에서는 대폭 간소화 하였다. 즉 복잡한 한도액 계산 대신 일정한 금액을 한도액(1,900만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단순화 하였다. 다만 접대비의 성격상 투명성관련 의무는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접대비와 관련된 현행 규정과 성실납세제도의 규정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성실납세제도의 접대비 한도계산

현 행	성실납세제도								
☐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률 <table> <tr> <th>매 출 액</th><th>적용률</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 신용카드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매 출 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정액 한도(1,900만원)로 단순화 * 예)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한도 ☐ 좌동
매 출 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기부금한도액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성실납세제도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소득금액 계산 전에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기부금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도계산을 단순화하였다. 현행규정과 성실납세제도의 기부금에 관한 규정의 비교는 <표 4>와 같다.

<표 4> 성실납세제도의 기부금 한도계산

현 행	성실납세제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기부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 ☐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 매출액의 0.5%

(4) 기타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단순화·표준화

위의 사항 이외에 현행 규정 중 복잡한 계산방법에 의한 한도액 계산이나 규정을 단순화하였다. 우선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종전의 퇴직금 추계액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법을 충당여액의 25%

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계산을 간편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 사외적립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지급이자에 대한 복잡한 지급이자 손비부인 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비로 인정하며, 외화차 입금등 자산·부채의 평가를 매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단순화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단계에서 각종 조세감면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가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실납세제도에서는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배제하되, 현행 감면제도의 감면율을 고려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액 노출이 많아져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급증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노출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일정배수 이상 증가한 경우 이로 인한 세금의 증가를 감면하는 것을 도입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성실납세제도에서도 이월결손금의 공제나 적용세율은 다른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규정은 그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너무 복잡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⁷⁾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계인력의 부족, 회계지식의 부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성실납세제도에서는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정하여 특별한 조건의 확인 없이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에게 일괄적인 표준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표준세액공제율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외의 경우는 15%,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5%의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하였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현행규정과 성실납세제도 규정의 비교는 <표 5>와 같다.

7)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감면 활용실태에 대한 분석은 심태섭 외(2005)의 p.51-53을 참조하시오.

〈표 5〉 성실납세제도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현 행	성실납세제도
☐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5년) 공제 ☐ 법인세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 13% ○ 과세표준 1억 초과 : 25% ☐ 조세감면 ○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 준비금 ○ 분할 익금산입 : 구조조정 ○ 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기준) : 10%~30% * 중기업은 5~15% - 창업, 고용창출창업, 지방이전, 농공단지 감면 ○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좌동 ☐ 좌동 ☐ 현행 각종 감면을 적용배제하되, 표준세액공제 - 최저한세 배제 - 농특세 제외 ○ 수도권 : 15% ○ 비수도권 : 25%

(2)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이 100% 노출되므로 소득노출률이 낮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울 수 있다. 특히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새로이 소득노출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소득노출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제도를 위한 소득노출시스템의 도입에 주저할 소지가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성실납세제도적용대상자의 과세표준 노출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장치를 마련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완전히 노출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납세자편의차원에서 부적절하므로, 성실납세제도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경감률을 단순화하였다. 즉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한하여 100% 공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실납세제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제혜택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현행규정과 성실납세제도의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제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성실납세제도의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방법⁸⁾

현 행	성실납세제도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대상 : 전년대비 매출액이 1.3배이상 증가한 ERP등 도입 중소기업,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 일정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률)을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 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1년차 100%, 2년차 50%) * 최저한세는 적용	○ 전년대비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시 ○ 전년대비 1.1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 * 최저한세 배제

바.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의 간소화

성실납세제도의 세액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규정중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소화 하였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법인세의 1/2나 당해 연도 6개월분을 가결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중 가결산에 의한 방법은 실제 결산하는 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납세자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져, 성실납세제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단순화하였다. 즉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로 단일화 하였다. 중간예납세액계산에 대한 현행규정과 성실납세제도의 규정의 비교는 <표 7>과 같다.

〈표 7〉 성실납세제도에서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현 행	성실납세제도
☐ 중간예납 ○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 좌동 (단일화) ○ 적용배제 ○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등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사하여 경정

사. 적용시기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제반 법령의 정비, 사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성실납세제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성실납세제도는 2008년도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최초로 적용하게 된다.

8) <표 6>의 현행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이다.

Ⅲ. 주요 외국의 유사제도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자에 대해 간편한 방식으로 회계기록을 유지하거나 세금계산을 단순화한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 호주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⁹⁾

1. 미 국

가. 일부 납세자에 대한 현금주의 회계의 도입

미국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용가능한 소득계산방법은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리고 절충주의(위 두 방법의 혼용)가 있으며,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대신에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기록을 허용하고 있다.

현금주의 원칙 하에서 소득은 현금, 또는 현금상당액이나 기타 자산이 실제로 수령되었거나 수령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식(또는 신고)하지 않는다. 수령의 의제는 실제로 수령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처분(control)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를 말한다. 동 현금이나 현금상당액을 수령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은 의제되지 않는다. 즉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수령하였거나 또는 수령했다고 추정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상당액이란 현물, 용역, 고객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등을 포함하여 공정시장가격을 지닌 일체의 물권을 말한다.

현금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이 금액에 대한 처분권을 가질 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급액의 입금이 가능할 경우 소득으로 인식(의제수령원칙: doctrine of constructive receipts)되고 매출채권, 기타 무보증 지불약속 등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표(coupons) 등은 처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의제수령원칙에 의거 기일이 도래하면 과세소득에 산입한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채권(Series E와 EE)의 가치증가분과 Series I 채권의 이자는 만기나 채권이 현금화되기 이전에 과세되지 않으나 현금주의 과세대상납세자는 위의 두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자산증가분을 매년도의 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지불하는 연도에 공제(손금산입)가 허용된다. 따라서 매입채무, 지급비용(경과이자 등)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수표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의 수수는 현금의 수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의 경우 비용지불을 위한 자금의 차용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발행하는 어음은 현금의 동가액이 아니며, 따라서 현금주의 납세의무자가 어음으로 지불할 경우 당해 어음의 지불이 담보에 의해 보증되었을 경우라도 지불이 완결될 때까지는

9)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한 세무신고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미국, 호주와 독일 이외에 일본, 이태리, 프랑스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태섭 외(2005)를 참조하시오.

공제할 수 없다.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인식시기 및 비용의 지불시기를 연기하거나 앞당겨 신고연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으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는 납세자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금주의 회계 적용대상자

신규납세의무자는 세 가지 회계처리방법(현금주의, 발생주의, 절충주의) 가운데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납세의무자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성과 융통성의 이점으로 인해 소득액과 공제액의 신고를 위해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C-corporation(정규법인), 정규법인을 파트너로 가진 partnership(동업기업),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트러스트, 조세회피목적사업(tax shelters) 등에 대하여는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농림업 기업과 특정 인적 용역법인, 그리고 1985년 이후 시작하는 모든 과거년도의 총수입금액이 5백만 달러 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조세회피목적사업체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회계의 사용이 가능하다. 5백만 달러 조건이란 직전연도를 포함하는 연속 3년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나 특정한 농업법인과 partnership, 그리고 조세회피목적의 농업종사자(farming tax shelters)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농업종사자는 구매자나 구매자의 대리인과의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대금지불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경우 농작물의 공급에서 생긴 수입의 인식을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대금지불이 공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의 인식을 다음해로 미룰 수 없다.

한 가지 회계방법을 기업의 어느 한 사업 분야에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회계방법을 다른 사업 또는 비영업 소득액과 공제액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사업분야 별로 별도의 기장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분야 사이에 이익과 손실을 이전시키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분야별로 다른 회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 사업의 소득금액 결정 방법으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는 동일사업의 비용 결정 목적으로도 현금주의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 목적으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는 동일 사업의 총소득금액 계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 회계방법의 변경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회계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방법의 변경이란 전반적인 회계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에 대한 취급의 변경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장기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의 인식방법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라. 항목별 회계처리방법

현금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도 항목에 따라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 각 항목별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현금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는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자본화하여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제도에 의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2) 선급비용의 회계처리

납세자는 지급년도에 일정한 조건(지급년도의 지불액이 창출하는 자산의 유효사용기간이 최종지불년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주의회계처리 대신 발생주의에 의한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선급이자에 대한 예외규정(the prepaid interest rule)이라 하며, 이 규정에 의하면 현금주의 납세자의 경우도 선급이자액을 대출기간동안 분할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초기에 지불되는 상환액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후기보다 크기 때문이다.

(3)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유통업 및 제조업의 경우, 현금주의를 사용하면 영업이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로 상품과 재료의 대금이 지불되고 수령되는 시점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이 당해 사업의 주요 소득창출요소일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발생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총수입금액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재고자산 보유업체는 주 사업이 재고자산의 판매일 경우에도 '매출'과 '매출원가'의 계산을 위해서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사업이 재고자산의 판매가 아닌 납세의무자는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총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출'과 '매출원가'의 계산을 위해서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수입금액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재고자산이 주요 소득창출요소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주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4) 대손처리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 납세자 채권의 대손금 공제는 실제로 현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나 공제된 액수가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영업이익계산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호 주 : STS(Simplified Tax System)

호주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각종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Tax System : STS)를 도입하고 있다. STS제도는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며, 1,000 호주달러(1 호주 달러 ≒ 830원) 이하의 상각자산은 즉시 상각하며 대부분의 상각 자산은 모아서 단일자산처럼 상각 되고,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연말에 평가에서 제외한다. 호주에서는 이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적용대상

납세의무자가 STS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평균 매출액이 1백만 호주달러(약 8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 말에 보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가능 금액이 총 3백만 호주달러 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은 호주의 부가가치세(GST)를 제외한 금액이며 관련되는 사업의 매출액과 관련되는 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또 지난 4년간의 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한 어느 3년간의 매출액의 평균이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연도가 4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이면 되고, 해당 연도는 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평균 매출액 대신에 미래의 예상매출액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위의 평균매출액이 1백만 호주달러를 넘거나 과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예상매출액은 해당연도의 실제매출액이나 해당연도의 합리적으로 추정된 예상매출액에다 해당연도 이후 2개 년도의 합리적으로 추정된 예상매출액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해당연도의 일부 기간에만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이를 감안하며 전체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한 다. 매출액의 합리적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 상황이나 미래의 매출과 관련되는 계약과 해당연도 현재까지의 실제 매출액, 사업의 종류 및 성격, 현재의 사업 규모 및 투자 규모에 대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매출액은 사업적인 공급액(The value of business supplies)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공급, 예를 들어 자본재, 자가소비 재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임대사업 등은 사업적인 공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업,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도 사업형태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하고, 비거주자도 적용가능하다.

나. STS 진입과 탈퇴

STS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단 STS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전 기간 동안 STS 납세자로 분류되고 기간 중 변경 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STS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STS의 적용을 받다가 STS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납세자가 결정한 경우 그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은 STS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STS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자발적으로 STS 적용에서 배제된 사업자는 요건이 재충족되면 바로 STS 적용이 가능하다. STS의 적용여부는 각 과세연도마다 판정한다.

다. 현금주의 회계

STS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판매수입이나 용역수수료와 같은 수익은 대부분 현금주의에 따라 현금이 수취되었을 때 인식한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즉,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비용은 오직 현금이 지불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며, 조세비용(tax-related expenses)과 수선비용(repair expenses)도 지불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호주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서 소득의 수입시기와 비용의 지출시기를 따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 혹은 특별하게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여기에까지 현금주의 회계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라. 항목별 회계처리 방법

(1) 감가상각

개별자산가액이 1,000 호주달러(1 호주달러 ≒ 830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전액이 즉시 상각되어 그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한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개별자산가액이 1,000 호주달러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25년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하나로 모아서 단일자산으로 취급되며 30%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내용연수 25년 이상의 자산은 한데 모아서 5%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그러나 건물은 이 pool에서 제외된다.

1,000 호주달러 이하인 개별자산이 사업용으로 전부 쓰이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쓰이는 비율만큼만 즉시 상각되고, STS진입 이전에 구입된 저가자산은 STS 진입 후 즉시상각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각자산 pool에는 포함될 수 있다.

내용연수 25년 이상의 자산이 2001년 7월 1일 이전부터 사용되었거나 설치되었다면 STS 납세자는 동 자산을 pool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기존의 상각규정대로 상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간에 pool에 포함되는 자산은 30%, 5%의 절반인 15%와 2.5%로 상각된다. STS 상각 pool의 잔액이 1,000 호주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상각한다.

모든 상각대상자산은 자동적으로 STS 적용 첫 해에 두 가지 자산 pool의 잔액(balance)에 할당된다. 해당연도에 구입된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pool의 기초잔액(opening balance)은 30%, 5%로 상각되고 해당연도 구입자산은 15%, 2.5%로 상각된 다음 기말잔액(closing balance)으로 남아 다음 해의 기초잔액이 된다.

상각대상자산을 처분한 수입은 즉시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납세자의 수입(taxpayer's assessable income)으로, 그리고 pool 자산이라면 pool의 기말잔액을 줄여준다. STS 납세자가 STS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 다음 계속되는 과세연도에서도 STS 납세자가 가진 자산 pool에는 STS 상각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pool 잔액이 1,000 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즉시 상각되는 규정도 적용된다. 그러나 STS 탈퇴 이후 구입된 자산은 이 pool에 추가되지 못한다.

(2) 재고자산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와의 차이가 5,000 호주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기말 재고자산의 변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기말 재고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 선급비용(Prepayment)

STS 납세자는 두 가지 조건(즉, 12개월이 넘지 않는 서비스 기간과 관련하여 지불된 선급비용과 서비스 기간이 지불기일 다음에 오는 소득년도의 마지막 날보다 늦지 않게 끝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선급비용을 즉각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용은 서비스 기간(10년이 상한선임)별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4) 기타

납세자는 STS의 어느 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STS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STS에서 정한 모든 항목에 따라야 한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종사자(primary producer)들은 STS의 상각규정이나 primary producer에 대한 특별공제규정 중 선택할 수 있다.

마. 최근의 개정내용

STS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재고실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스케줄을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현금출납부와 예금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쉽게 산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정부에서 STS를 도입할 당시에 적용대상자의 95%이상이 STS제도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3년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의 단지 14%만이 이 제도를 선택하였다(Dirkis and Bondfield 2004). 이에 호주 정부는 STS의 두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STS에서는 더 이상 현금주의방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 매출액이 75,000 호주달러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25%의 추가적인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하였다(McKerchar 2005). 이렇게 함으로써 STS를 보다 많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계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3. 독 일

독일에서는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 회계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중 전문인적용역제공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주의회계 적용자(IV/3-Rechner)들도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감가상각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적용대상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현금주의 회계(Gewinnermittlung durch Ueberschussrechnug)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는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인적용역 제공자이며 이들에게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으나, 이를 선택할 수는 있으며 복식부기기장의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화된 전문인적용역 제공자는 현금주의 회계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무소를 가지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화된 회계법인인 현금주의회계가 불가능하다.

나. 현금주의 회계에서 소득의 개념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의 차액이 소득으로 계산되나 여기에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기장의무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존재하지 않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비용과 관련하여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장은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가상각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전문인적용역 제공자도 감가상각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사업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IV. 성실납세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성실납세제도는 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겪고 그 과정에서 최초의 의도가 다소 후퇴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성실납세제도가 진정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¹⁰⁾

10)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각종 간담회나 태스크포스팀의 논의과정(재정경제부 2006b -2006d)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 적용대상의 문제

현재의 성실납세제도에 의하면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법인: 5억, 개인: 1.5억~6억원)중 소득노출이 확실한 11가지 유형의 사업자만이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가능대상자의 수가 개인은 납세자의 3%인 3만여명,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1%인 3천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적용가능대상자중 실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후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 매출액기준상의 문제

(1) 매출액기준의 필요성

현행 성실납세제도의 경우, 소득노출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11개의 유형에 속한 사업자만이 적용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11개 유형의 사업자는 어차피 소득금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제도에서 꼭 매출액을 일정규모-게다가 상당히 적은 규모-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물론 사업자가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문제로 인하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하여도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장부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회계기록 유지노력을 후퇴시킬 소지가 있기에,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현재의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축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행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매출액기준금액을 외국의 예, 관련 업계-특히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입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매출액기준의 적정성

현재 영세사업자에게 보다 간편한 세무절차를 거쳐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3년간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5백만 달러(한화 약 5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실납세제도와 비교적 유사한 호주의 경우는 3년간 평균매출액이 1백만 호주달러(약 8억여 원)를 넘지 않으면 간편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예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매출액기준금액은 지나치게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사업자의 소득노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소득노출률의 정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성실납세제도의 매출액기준금액은 지나치게 작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기준(매출액 6억 원 이하)으로는 소규모기업만이 적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업들은 자체기장보다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실납세제도를 통하

여 소규모기업에 대한 장부기장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제도도입의 초기이며, 현재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업자의 실세소득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단 적은 금액으로 제도를 출발시키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고 소득노출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현행 매출액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적용대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특히 현행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의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소득노출이 되니 적용대상규모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해줄기를 요청하였다. 물론 시행 초기에 지나치게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 행정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성실납세제도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현행 매출액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성실사업자판단기준의 문제

현행 성실납세제도는 소득노출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춘 11개의 유형에 속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사업자의 소득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자의 소득노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시스템 이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성실납세제도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일 것이다.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만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정책의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아닌 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 전자장부시스템의 개발과 정착

앞으로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보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소득노출이 보장되는 시스템의 개발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하나의 형태로 성실납세제도 도입초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 전자장부시스템의 개발이다. 전자장부시스템이란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가 그 거래내용만을 정해진 형식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최종 재무제표 및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을 자동적으로 산출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전자장부시스템 자체와 그 개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관련단체의 반대로 성실납세제도 도입 이후에 전자장부의 개념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물론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거래내용만을 입력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회계처리까지 반영되는 회계처리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입력내용을 간단히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일부 회계처리 프로그램 중에서는 사업자가 은행거래를 한 경우, 은행을 통한 입출금의 내역을 자동적으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의 회계처리시스템보다는 사업자의 소득노출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의 소득노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회계처리 프로그램은 더욱 더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회계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회계지식이 부족한 일반 영세사업자도 간단히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장부개발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현금수입·지출거래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자의 소득을 더욱 은폐할 소지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부시스템의 채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보다 소득노출증대에 기여할 회계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여 이를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현재보다는 영세사업자의 소득노출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100%의 완벽한 소득노출은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소득노출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1개의 유형에 속한 사업자에게만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게 한 현행 제도 대신에 소득노출을 보장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도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예를 들어, 국세청의 심사를 거친 후 성실납세제도 대상사업자로 인정하는 방안)를 거치면 성실납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세무대리인의 추천에 의한 선발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에게 회계기록과 세금납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무대리인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자도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자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추천권한이 있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단체의 추천을 얻은 세무대리인으로 국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세청에 의해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본인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천된 자를 국세청의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로 확정하는 방안이다.

만일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다면, 전산시스템 등 회계기록 및 유지 측면과 회사의 성실신고납세의 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추천된 사업자가 사후에 비성실사업자로 판명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를 추천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문제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성실납세라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심어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성실납세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모범세무대리인에 의한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추천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 기록유지의 문제 : 현금주의의 도입

현행 성실납세제도에 의하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형태로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계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정식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영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영세사업자에게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회계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기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서는 엄격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현금주의에 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현금주의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성실납세제도의 연구초기에는 현금주의의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현금주의의 도입을 미루었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현실적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계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강요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으로 사업자의 편의와 부가가치세법간의 조화로운 선택을 통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성실납세제도도입에 대한 혜택의 적정성 문제

현재와 같이 사업자의 완전한 소득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세금금액을 상계할 만큼 유인책(incentive)이 충분한 가를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하여금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유인으로 금전적 혜택과 비금전적 혜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금전적인 혜택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업자보다 많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규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표준세액공제

현행 성실납세제도에 의하면, 각종 감면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도권에는 15%, 비수도권은 25%의 표준율에 의한 표준세액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율은 중소기업에 위한 수많은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도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현행 세액감면 중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세액감면 중 특별한 준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다. 이 세액감면은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상이한 감면율을 적용하며, 그 감면율은 <표 8>과 같다.

〈표 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수도권안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업 등	10%	10%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매업 등	적용배제	5%
	지식기반산업	10%	15%
	기타업종	적용배제	15%

업종별·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최소 5%부터 최고 30%까지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실납세제도에서도 이러한 감면율의 크기를 감안하여 현재의 감면율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 도입초기에는 사업자에 대한 금전적인 혜택이 가장 좋은 유인책일 수 있기에, 기존 표준 세액공제율(수도권-15%, 비수도권-25%)을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¹¹⁾

(2) 매출증가로 인한 감면

성실납세제도의 전제조건인 사업자의 소득노출로 인한 사업자의 세금증가를 감안하여, 성실납세 제도에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1.15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한하여 100%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소득노출로 인한 세액증가의 불이익 때문에 성실납세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와 유사하다. 이 규정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1.3배이상 증가한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률)을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 세액을 첫째에는 100%, 2년차에는 50%만큼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성실납세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입금액 증가율 측면에서는 성실납세제도가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지만, 그 공제율 측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이 보다 유리하다. 성실납세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수입금액증가로 인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비금전적인 혜택

(1) 세무조사의 면제

성실납세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물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세금탈루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성실납세

11) 호주의 경우도 2005년 7월부터 STS제도를 개정하면서, 75,000 호주달러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25%의 추가 세금공제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출규모에 따른 추가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 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면제규정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매우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에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실제로도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자중 객관적인 증거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모범성실납세자 제도와의 연결

현행 각종 세법규정에 의하면,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완화,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일부은행의 최고등급고객으로 우대,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여러 비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혜택 중에서 일부를 앞으로 적용할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에게도 적용하여,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앞에 제시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유인책을 부여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당국에서는 힘써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나 세무지식이 부족하기에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빠짐없이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여 세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자, 재정경제부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성실납세제도를 마련하여 입법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성실납세제도는 본인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제도가 간편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세무당국은 성실납세제도의 입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중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납세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관련 이해단체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근에는 국회의 마지막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갖춘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경제부의 성실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우리나라 성실납세제도의 개요와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본 후, 외국의 유사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성실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기업의 현행 매출액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소득노출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도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추천에 의하여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기록 방안의 도입과 넷째, 현재의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의 부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어렵게 마련된 성실납세제도가 회계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심태섭 · 김유찬 · 전규안. 2005.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재정경제부. 2005a.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 간편납세 추진방향”. 내부문서.
_____. 2005b. “중장기조세개혁 연구용역 계획”. 내부문서.
_____. 2005c. 「2005년 세제개편(안)」.
_____. 2005d. “성실납세제도 도입방안”. 내부문서.
_____. 2006a. “성실납세제도”. 내부문서.
_____. 2006b. “성실납세제도 T/F 1차 회의자료”. 내부문서.
_____. 2006c. “성실납세제도 T/F 2차 회의자료”. 내부문서.
_____. 2006d. “성실납세제도 T/F 3차 회의자료”. 내부문서.
조세일보. 2005.12.7. “성실납세제로 이름 바뀐 간편납세제”.
_____. 2005.12.12. “성실납세제도 무산”.
_____. 2006.2.20. “누더기 성실납세제··그나마 입법 또 보류”.
_____. 2006.4.19. “성실납세제 또 다시 보류··”.
Dirkis, M. and B. Bondfield. 2004. The RBT ANTS Bite : Small Business the First Casualty. *Australian Tax Forum* 19 (2) : 107-158.
McKerchar, Margaret. 2005. Reforming the Taxation of Small Business in Australia : 2000 — 2005. In *Proceedings of KAST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 79-96.

Simplified Tax System for Small Business of Korea

Shim, Tae-Sup* · Kim, Yu-Chan** · Jeon, Kyu-An***

— <Abstract> —

Since 2005, Korea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s developed the Simplified Tax System (STS) targeting small business companies that are willing to faithfully report corresponding tax amounts in Korea. The system is designed to reduce the compliance costs of the companies by allowing them to calculate their taxes with the simplified tax rul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Simplified Tax Systems (STS) and to provide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TS. By doing that the paper reviews the main ideas and history of the STS. Furthermore the authors of this paper look into the similar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Australia in order to extrac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TS the annual turnover threshold for the eligibility of the STS must be raised, and STS has to be also applied to such taxpayers, who disclose their taxable income automatically with new electronic accounting system. In addition, the taxpayers could be also qualified with tax adviser's recommendations and for the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Cash-Flow method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to introduce. Further more financial and non-financial benefits should be given to the taxpayers for adopting STS.

<Key words> Simplified Tax System, small business companies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